안산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334

제출년월일 : 2020. 4.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은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정한 과태료 금액 결정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산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안 제20조)

□ 개정조례안 : 붙임1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3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20. 1. 17. ~ 2020. 2. 6. (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4

○ 방침결정문 : 붙임5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6

환경정책과 - 마송희 - 2020-04-02 09:57:48 - ***.*.***.6

< 붙임 1 >

안산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산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20조 앞에 "제7장 과태료 부과"를 삭제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환경정책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환경정책과장 신 항 식
	담당·팀장 직위·성명·전화	수질보전팀장 김 학 응
	담 당 자 성명전화	신 우 현 (행정 2244)

환경정책과 - 마송희 - 2020-04-02 09:57:48 - ***.*.***.6

< 붙임 2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산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장 과태료 부과	〈삭 제〉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삭 제〉
〈별 표〉	〈삭 제〉

과태료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된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과금액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1항제1호			
가. 법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 ·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1항제2호			
가. 법제11조제2항의 표지부착				

환경정책과 - 마송희 - 2020-04-02 09:57:48 - ***.*.***.6

위반		10	20	30
나. 법제11조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제1항제3호			
가. 법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나. 법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20	40	60
		10	20	30
4.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1항제4호			
		10	20	30
5.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2항	5	10	20

환경정책과 - 마송희 - 2020-04-02 09:57:48 - ***.*.***.6